
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

● 사업목적

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

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

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'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'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게 제출

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

사업종료,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게 '상실신고서'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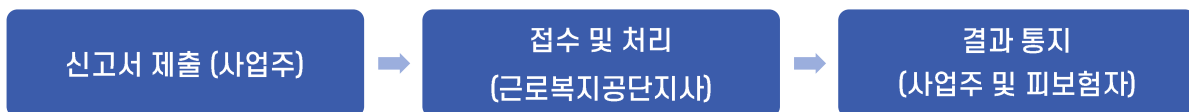
(* 이직확인서의 경우,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음)

- 일용근로자의 경우 「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」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게 '근로내용확인신고서' 제출

● 과태료

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 미신고(지연신고 포함)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
(미신고는 1인당 3만원, 최대 100만원), (거짓신고는 1인당 5~10만원, 최대 300만원)

● 사업추진체계(지원절차)



● 지원문의

- 근로복지공단 : 1588-0075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